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801
----------	-----

2024. 12. 11.(수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조성태 의원 등 7명
- 나. 발의일자 : 2024년 11월 15일
- 다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- 라. 상정일자 : 2024년 11월 26일
 -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조성태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청남대 입장료(할인대상, 연령기준)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청남대 순환버스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남대 관리·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아동 입장료 면제대상 명확화(안 제4조, 별표 1)
- 입장료 할인대상 추가(안 제4조)
 -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증서 소지자

-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○ 순환버스 운영 규정 신설(안 제18조)

○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- 관람자 →관람객(안 제4조, 안 제5조, 안 제11조, 안 제12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○ 본 조례안은 청남대의 입장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순환버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,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, 제11조제3항, 제12조제1항의 “관람자”를 “관람객”으로 개정하였으며,

○ 아동 입장료 면제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던 “7세 이하의 아동”을 “7세 이하의 미취학아동”으로 개정하였으며, 같은 조 제3항제3호의2 및 제6조를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증서 소지자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입장료 할인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청남대 방문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.

○ 또한, 제18조를 신설하여 축제기간 등에 청남대 방문객을 위한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이를 통해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청남대 근교 및 진입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순환버스 운영에 있어 세부 운영지침 및 안전수칙 등을 마련하고, 관련 부서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“관람자”라 한다”를 ““관람객”이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아동”을 “미취학 아동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「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가 입장하는 경우: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을 할인

6.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: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 할인

제5조제2항 본문 중 “관람자는”을 “관람객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관람자”를 “관람객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관람자”를 “관람객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관람자가”를 “관람객이”로 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순환버스의 운영) ① 소장은 축제기간 중 청남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순환버스를 방문객에게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.

③ 소장은 지역축제의 성격, 위치,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운행노선 및 운행일자,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.

④ 순환버스 이용자는 청남대를 방문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.
별표 1의 어린이란 중 “7세~12세”를 “7세(취학)~12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입장료) ① 청남대를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(이하 “<u>관람자</u>”라 한다)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7세 이하의 <u>아동</u> 및 보호자 1인</p> <p>3. ~ 13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4. ~ 5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 <p>제5조(입장금지 및 행위제한) ①</p>	<p>제4조(입장료) ① ----- ----- “<u>관람객</u>”이라 한다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 <u>미취학아동</u> ----- --</p> <p>3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의2. 「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가 입장하는 경우: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을 할인</u></p> <p>4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.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: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 할인</u>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입장금지 및 행위제한) ①</p>

(생략)

②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~ 2. (생략)

3. 음주 및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

4. (생략)

제11조(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 배상) ① ~ ② (생략)

③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청남대의 자료와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전시 및 체험물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.

제12조(의무실 설치) ① 소장은 관람자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실을 설치한다.

② ~ ③ (생략)

<신설>

(현행과 같음)

② 관람객은 -----

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관람객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 배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관람객 -----

-----.

제12조(의무실 설치) ① -----관람객이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순환버스의 운영) ① 소장은 축제기간 중 청남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순환버스를 방문객에게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.

② 소장은 지역축제의 성격, 위치,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운행노선 및 운행일자,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.

③ 순환버스 이용자는 청남대를 방문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

[별표 1]

입 장 료 (제4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개 인	단 체 및 야간개장 (17:30이후)	비 고
어 른	6,000	5,000	19세 ~ 64세
청소년	4,000	3,000	13세 ~ 18세
어린이	3,000	2,000	<u>7세(취학) ~ 12세</u>
노 인	3,000	2,000	65세 이상
군 인 등	4,000	3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계급이 하사 이하인 군인• 사회복지무요원